시 민

문서번호	노동정책과-2328
결재일자	2013.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노동정책과장	★고용노동정책관
협조	*노동복지팀장*	

'13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승인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13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사업계획 승인

취약계층근로자들에게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의 '13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사업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 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13. 1월 ~ 12월 (12개월)

○ 대 상 : 4개 자치구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 예 산 : 1,500백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현황 — 4개소

구분	주소	설립일	규모(㎡)	인 력	위탁단체		
					단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구 성수동2가 300-3	2011.5.12	87.6	3명	서울동부비정규직노동센터	센터장 최창준	2007.3.9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홍은동 48번지 84호	2011.7.27	52.8	4명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센터장 조형일	2010.12.21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로구 구로3동 851 한화비즈메트로1차 213호	2012.3.20	117.36	3명	서울남부노동희망센터	센터장 고영국	2010.2.20
노원노동복지센터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마들역 지하1층	2012.6.1	120	4명	민주노총 북부지부	센터장 허섭	2012.6.1

【 2012년 운영실적 】

◈ 각 노동복지센터에서 노동법률 상담, 노동법 교육, 노동자 건강프로그램, 노동자 교양강좌(인문학, 컴퓨터 활용) 등을 운영한 결과 연인원 33,800명의 시민 참여

구분	이용자수(명)	시행사업수(개)	집행액(천원)	비 고
계	33,873	100	736,465	
성 동	9,196	27	198,700	운영('12.5.1~12.31)
서대문	6,537	26	196,988	운영('12.5.1~12.31)
구 로	4,593	15	183,372	운영('12.5.1~12.31)
노 원	13,547	32	157,398	운영('12.6.1~12.31)

2013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지원계획

○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 2. 19 (화) 14:00 / 프레스센터 3층 세미나룸
- 위원구성 : 총 4명〔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노동정책과장)〕
- 사업계획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목적·목표의 구체성과 타당성
  - 프로그램 수행방법의 이행가능성 정도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시설운영시 장비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 2012년 조사·연구 결과 활용사업 내용 등
- 평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

○ '13년 사업추진 방향

- 노동법률 상담·교육, 노동기본권 확보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취약계층근로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영세·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실무적용 가능한 취업교육 및 직업재활사업의 전문화 지원 등
- 홍보 다각화로 센터 인지도 향상 및 취약근로자 참여 확대
  - E-뉴스레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노동현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초청하여 노동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강화

’13년 사업계획 심사 및 검토 결과

○ 사업예산 심사결과(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계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계	1,091,338	281,572	273,584	271,982	264,200
사업비	611,865	165,956	148,810	130,736	166,363
인건비	398,983	103,916	100,734	100,996	93,337
운영비	80,490	11,700	24,040	40,250	4,500

○ 사업비

① 사업추진상 효율성 및 구체성이 미약하거나 노동복지센터 예산지원 근거가 미비한 경우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두레품 노동문화잡지, 노동현안 백서 발간, 교육생 사례품 증정, 송년회 실시, 타시설 내 근로자 휴게실 개선사업 등)

② 사업비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추진비, 활동비, 회의비, 다과류 구입비, 홍보비 등 일부 조정

③ 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운영 책임배상 보험료, 상담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은 추가반영

④ 사업비 집행기준을 벗어난 강사료, 자원봉사자 인건비 등은 기준금액으로 조정하고, 기타 사업신청서상 계산 착오금액 수정하여 반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수)	신청예산	승인예산	감액분
계	97	707,827	611,865	95,962
성동	20	181,804	165,956	15,848
서대문	24	173,230	148,810	24,420
구로	24	156,510	130,736	25,774
노원	29	196,283	166,363	29,920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① 사업비(인건비 제외) 대비 운영비 반영비율(5%)에 맞도록 사무관리비 일부 조정

② 국내여비 및 특근매식비(1개센터), 세무사 수수료(1개센터) 미반영

③ 임대료 및 (시설)관리비는 금년에 한하여 지원
(센터 공간확보는 자치구 부담)

(단위 : 원)

구분	항목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총 계		**115,616,000**	**124,774,000**	**141,246,000**	**97,837,000**
인건비	소계	103,916,000	100,734,000	100,996,000	93,337,000
	급여	73,996,000	72,168,000	72,599,000	65,546,000
	수당	14,333,100	13,372,000	13,553,000	13,035,000
	사용자부담금	15,586,900	15,194,000	14,844,000	14,756,000
운영비	소계	11,700,000	24,040,000	40,250,000	4,500,000
	사무관리비	5,100,000	6,240,000	3,000,000	3,180,000
	기타운영비		100,000	~~2,244,000~~	
	우편·통신 및 제세공과금 등	4,560,000	1,200,000	1,510,000	1,320,000
	연료비		900,000		
	국내여비	-	-	-	~~5,040,000~~
	특근매식비	-	-	-	~~840,000~~
	임대료			31,900,000	
	(시설)관리비	2,040,000	15,600,000	3,840,000	

행정 사항

○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4개센터 공동사업 추진

-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등 공동제작 활용하여 홍보의 효율성 제고
- 센터직원 보수교육
- 4개센터 협력체계 구축(상담서버구축, 정보교류, 상호이해 등)

○ 센터별 사업추진 유의사항

- 노동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 취약계층위주의 프로그램 체계화 및 다양화를 통해 센터 정체성 확립
- 홍보다각화로 센터 인지도 향상 도모
  - · E-뉴스레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 · 노동현장에 직접 찾아가거나 초청하여 노동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강화

○ 승인된 사업비 범위내 실비 사용 원칙 준수

- 근로복지시설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원칙 준수
- 집행후 사후 정산 철저

○ 노동복지센터 공간 확보비용 자치구 부담원칙 준수

- 자체공간 확보의무 이행 및 불가시 사무실 임차료·관리비 등을 '14년 자치구 예산에 반영